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9
------	-----

발의년월일 : '94. 8. 6

제안년월일 : 최진판의원외 7인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일부 개정 공포시행('94. 7. 6)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액 중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일 비 : 30,000원 → 50,000원

○ 국내여비 상향조정

◦ 현저교통비 { 의장, 부의장 5,000원 → 6,500원
의원 4,500원 → 6,500원

◦ 숙 박 비 { 의장, 부의장 17,000원 → 20,700원
의원 14,000원 → 16,200원

◦ 식탁료 삭제

○ 국외여비 상향조정

◦ 숙 박 비 { 의장, 부의장 40~100\$ → 62~130\$
의원 33~ 83\$ → 46~114\$

◦ 식 비 { 의장, 부의장 33~ 53\$ → 49~107\$
의원 30~ 48\$ → 37~ 81\$

○ 러시아 등 새로이 수교한 16개 국가에 대하여 여비 등에 관한 지역 등급을 정함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 입	선박 운 입	항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부산직할시 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표(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 있 는 경우에는 최상등 급의 철도 임	•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 있 는 경우에는 최상등 급의 선임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25 나등급25 다등급25 라등급25	가등급130 나등급 90 다등급 72 라등급 62	가등급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 등급 구별 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 액	• 등급 구별 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 액								
의 원	• 공무 상 의 사유로 인 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 상 의 사유로 인 하여 침대 요금을 필 요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가등급20 나등급20 다등급20 라등급20	가등급114 나등급 74 다등급 55 라등급 46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동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
메리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
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
국

다. 다동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
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동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

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신 · 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구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갑5,000	갑17,000	갑11,000		의장				
부위원장	을4,500	을15,000	을9,500	800	부위원장	6,500	20,700	11,000	
의원	갑4,500 을4,000	갑14,000 을11,500	갑10,500 을9,000	800	의원	6,500	16,200	10,500	
비고: 현조례와 같음					비고: 개정조례안과 같음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국외여비지급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가동급 100	가동급 53			의장	가동급 130	가동급 107		
부위원장	나동급 79	나동급 46			부위원장	나동급 90	나동급 78		
	다동급 60	다동급 40				다동급 72	다동급 58		
	라동급 40	라동급 33				라동급 62	라동급 49		
의원	가동급 83	가동급 48			의원	가동급 114	가동급 81		
	나동급 66	나동급 42				나동급 74	나동급 59		
	다동급 50	다동급 36				다동급 55	다동급 44		
	라동급 33	라동급 30				라동급 46	라동급 37		

별표신 · 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의회소재지내출장시여비지급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table border="1" data-bbox="120 628 679 806"> <thead> <tr> <th>구분</th><th>지급액</th></tr> </thead> <tbody> <tr> <td>의장 · 부의장</td><td>1일당 5,000</td></tr> <tr> <td>의원</td><td>1일당 4,500</td></tr> </tbody> </table> 비고: 생략	구분	지급액	의장 · 부의장	1일당 5,000	의원	1일당 4,500	[별표 3] 의회소재지내출장시여비지급표 (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table border="1" data-bbox="707 624 1274 802"> <thead> <tr> <th>구분</th><th>지급액</th></tr> </thead> <tbody> <tr> <td>의장 · 부의장</td><td>1일당 6,500</td></tr> <tr> <td>의원</td><td>1일당 6,500</td></tr> </tbody> </table> 비고: 현행과 같음	구분	지급액	의장 · 부의장	1일당 6,500	의원	1일당 6,500
구분	지급액												
의장 · 부의장	1일당 5,000												
의원	1일당 4,500												
구분	지급액												
의장 · 부의장	1일당 6,500												
의원	1일당 6,500												